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미이행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의 목적·대상·사업 등 확대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

1) 종전에는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체적 지원대상을

열거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자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난민 인정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12조제1항에서 고령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우선 선발 규정을 삭제함.

다. 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1. . . ~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에게 작업”을 “국민에게 직업”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를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근로자”를 “국민”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은 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같은 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

5. 그 밖에 연령, 소득수준, 중복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제7조의 제목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를 “선발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같은 항 중 “근로자에게”를 “훈련생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가”를 “훈련생이”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다른 실업자등에 대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 제53조제2항, 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2호·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53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16조제4항제3호·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9조제9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3제1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㉒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㉓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72조 및 제7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㉖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45조제3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㉗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㉙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
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㉚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
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
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㉝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⑥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⑧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㉟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㊱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㊱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항 및 제34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4호 및 제27조의4제5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⑧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⑩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㉑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㉒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른 청소년

㉓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제10호의2가목 및 제9조제1항제7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㉕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영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훈련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훈련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하며, 훈련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말한다)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시정명령	훈련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훈련정지 3개월	지정취소

한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 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 제29조제9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일부만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 과정을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 전 과정을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 법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지정취소		
바.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1)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사.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 우 2) 그 밖의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호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지정취소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아.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 약의 해지를 받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 항에 따른 인정취소를 받은 경 우	법 제31조 제1항제9호		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 비고

- 제2호 **라**목2)가)의 경우 1차 위반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각각 법 제16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제4항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훈련의 전 과정에 대하여 1년 미만 기간의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것을 말한다.
- 제2호 **아**목1)의 경우 1차 위반은 법 제16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를 받은 것을 말한다.
- 제2호 **아**목2)의 경우 1차 위반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를 받은 것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u>근로자직 업능력 개발법</u>」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 위) 「<u>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 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u>근로자에게</u> <u>작업에</u>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 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u>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u> <u>시행령</u> 제1조(목적) ----- 「<u>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u>」----- ----- -----.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 위) 「<u>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u>」----- ----- ----- -----.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 ----- -----. 1. ----- <u>국민에게 직 업</u>----- ----- -----

2. 3. (생략) ② (생략)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u> 2. 3. (생략) 4. 그 밖에 <u>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추진을 위한 사업</u>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생략)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 ----- -----. 1. <u>재직 중인 근로자</u>----- ----- ----- 2. 3. (현행과 같음) 4. ----- <u>국민</u>-----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은 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
---	--

<u>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u> <u>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u> <u>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u> <u>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u> <u>대상자</u> <u>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u>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u> <u>받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u> <u>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u> <u>의 지원대상자</u> <u>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u> <u>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u> <u>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같</u> <u>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u> <u>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u> <u>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u> <u>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u> <u>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u> <u>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여성가장</u> <u>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u> <u>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u> <u>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u> <u>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u> <u>양능력이 없는 사람</u> <u>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u>	<u>재 재직 중인 사람</u> <u>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u> <u>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u> <u>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u> <u>법률」 제13조를 적용받는 사</u> <u>람은 제외한다.</u> <u>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u> <u>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같</u> <u>은 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u> <u>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u> <u>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u> <u>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u> <u>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u> <u>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u> <u>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u> <u>외한다.</u> <u>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u> <u>이 2년 이내인 사람</u> <u>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u> <u>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u> <u>학생</u> <u>5. 그 밖에 연령, 소득수준, 중복</u> <u>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u> <u>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u> <u>련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u> <u>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u>
---	---

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훈련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

- 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
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
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과 그 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1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
가. 「고등교육법」 제2조(같

은 조 제5호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
생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
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
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
학생

1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
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
시하는 사람

제7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
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
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
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
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
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
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용
노동부령-----

--- 선발한다.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
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
(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
다)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
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
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
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
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
하는 경우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 사람이 -----

-----.

② -----
----- 사람이 -----

----- 훈련생에게 -----
-----.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5조(훈련비의 반환)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람이 -----

-----.

⑤ -----
-- 사람이 -----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훈련비의 반환) ① -----

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u>근로자가</u>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생략) 제27조(<u>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u>) (생략)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u>」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생략) ② ③ (생략)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 (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훈련생이</u>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u>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u>)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① ----- ----- ----- -----. 1. - 「<u>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u>」 ----- --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1의2. ----- 따른 -----

1의3.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0